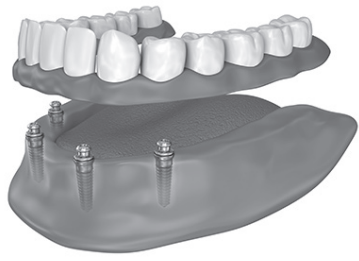


■ 치과 칼럼

오버덴처 (implant overdenture)



▲ 오버덴처 형태의 틀니

오늘은 틀니의 또 다른 형태인 오버덴처 (implant overdenture)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오버덴처는 자연치아가 전혀 남아 있지 않아 전체 틀니를 해야 하는 환자들에게 효과적이고, 적은 수의 임플란트 치아를 식립한 후 그 위에 장치를 달아 틀니와 연결하는 구조입니다.

오버덴처는 기존의 일반 의치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인 약한 접착력(retention)을 높여주어 때변 틀니 접착제를 발라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주고 저작능력을 향상 시켜줍니다. 또한 소수의 임플란트지만 그로 인해 임플란트 식립 부위의 잇몸뼈의 감소도 예방해 줍니다.

그 종류로는 바(bar) 타입, 캡 (cap) 또는 로케이터(locator) 타입, 오링(o ring) 타입 등이 있습니다.

바 타입은 임플란트 중간에 막대 형식의 바를 연결하여 그 위에 틀니를 끼우는 방식이고, 캡 타입은 각각의 임플란트에 상부 보철물을 체결한 후 마치 똑딱이 단추처럼 그 위에 틀니를 끼우는 방식이며, 오링 타입은 틀니에 작은 고무링을 붙여 넣고 임플란트 상부 체결 부위에 끼우는 방식입니다.

이런 다양한 형태의 오버덴처 가운데 어떤 형태를 시술할 지는 환자의 뼈 상태, 저작하는 힘, 임플란트의 식립 방향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오버덴처에 사용되는 임플란트의 개수는 환자의 뼈 상태에 따라, 위에는 적게는 4개에서 많게는 6개, 아래는 2개에

서 6개를 심게 됩니다.

이렇게 심은 임플란트가 뼈에 고정된 후 (보통 6 개월) 그 각각의 임플란트 위에 덴처와 연결되게 되는 상부 보철물(abutment)을 체결하고, 틀니 안쪽에 보철물과 연결되는 형식의 작은 링(ring) 또는 클립(clip)을 심어 상부보철물과 연결시킬 수 있게 합니다.

틀니는 씹는 힘을 전부 잇몸에서 받기 때문에 만약 잇몸뼈가 흡수되기 시작하면서 저작력이 약해지고 잡아주는 힘도 약해지게 돼 심지어 대화를 할 때에도 틀니가 덜그럭거리거나 심하면 빠지게 됩니다. 반면 임플란트 틀니는 임플란트에 연결하므로 유지력이 뛰어나며, 임플란트가 씹는 힘을 분담하기 때문에 단단하거나 질긴 음식을 먹는 데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틀니 없이 전체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높은 비용으로 많은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오버덴처는 임플란트 개수가 적고 틀니만 만들면 되므로 비용의 절감이란 큰 장점도 있습니다. 물론 전체 임플란트 + 크라운관처럼 저작 능력이 강하진 않지만, 기존의 틀니에 비해 뛰어난 유지력, 향상된 저작능력으로 환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오버덴처의 관리는 자연치아처럼 꾸준히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매일 잠자리 전에 틀니를 깨끗이 틀니 전용 칫솔로 닦고, 임플란트 부위도 칫솔과 구강세정기로 꼼꼼히 잘 닦으셔야 합니다. 자연치아와 마찬가지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 임플란트 주위로 잇몸질환이 생기거나 심하게는 녹게 되어 임플란트를 빼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웰컴치과그룹 이주영 원장 (로마린다 치대 졸업)
Korea Town: (213) 381-2827
Irvine: (714) 838-2875
Fullerton: (714) 552-5373



■ 법률 칼럼

복지 혜택 (Public Charge) 수령과 영주권 신청

트럼프 행정부가 푸드스탬프(식료품 보조)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 등 정부 복지 혜택의 수혜자들의 영주권 신청을 기각하는 새 이민 정책을 지난 10월10일 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하고 2019년 초반부에 시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초까지 60일간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에 최종 규정을 발표하고 새해 초 시행에 들어가게 되면 푸드스탬프와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 처방약, 롱텀케어, 섹션 8 주택보조 등을 받으면 영주권과 각종 비자 신청이 거절될 수 있게 됩니다.

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장문의 생활보호대상자 이민 혜택 규제안의 1차안(proposed rule)에 대해 12월 10일까지 60일 동안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규정(Final rule)을 발표하고 30일~90일간의 코멘트를 거쳐 새 규정이 바로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르면 새 정책이 공식 발효된 후부터 이민 신청자들과 그 가족들이 직전 36개월(3년) 중에 1년간 연방 빈곤선의 15% 이상의 정부 복지 혜택을 받으면 이민국이 바로 영주권 신청을 거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빈곤선 15%는 아래 설명합니다).

새 정책에서는 영주권 기각 대상이 되는 퍼블릭 차지에 기존의 SSI 현금 보조와 TANF 웰페어에다가 새로 푸드스탬프(SNAP),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노년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어중 파트 D인 처방약, 정부지원 롱텀케어, 섹션 8 공공주택 임대, 렌트, 바우처 등 주택 보조가 추가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민 신청자가 본인과 가족들을 함께 영주권 신청 전 3년 기간 중



의 1년 동안 연방 빈곤선의 15%인 개인 1,821달러, 4인 가족 3,165달러 이상 금지 대상 정부 복지 혜택을 이용한 것으로 판명이 되면 영주권 신청이 자동으로 거절됩니다.

또한 가족이민 초청자들은 재정 보증 기준을 기존 125% 보다 2배 높은 연방 빈곤선의 250%의 소득을 입증토록해서 가족초청을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장기 체류 비자 소지자들은 체류 연장이나 비자 변경 시에도 복지 혜택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비자 갱신 또는 신분 연장을 거부당하게 됩니다. 다만 새로 도입되는 1만 달러의 퍼블릭 차지 이민 본드를 구입하면 영주권 거절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ACA (오바마케어 정부보조금), CHIP(아동건강보험), WIC (여성, 어린이 영양 지원 프로그램), 저소득층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은 퍼블릭 차지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영주권 거절 걱정 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천관우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 OC Office: (714) 522-5220
6281 Beach Blvd, #300
Buena Park, CA 90621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그룹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취업 영주권 상담 / DACA 연장접수

-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빅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